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//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개정이유

-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95. 12. 29 지역보건법이 공포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의료장비 보급에 따른 수가를 정비하며,
-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코자 함.

근거법령

-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(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)
-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(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)
- 조례 제14조(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)

주요골자

-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(95.12.29)이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)
- 불소도포의 수가를 방문당수가로 조정하고, 수질검사는 보건소 분장 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하며, 또한 농어촌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골밀도측정기 구입설치로 인한 수가 결정(안 제11조)
- 제1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노령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본군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인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개정조례안 및 신.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, 제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보건소장은 군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-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

제11조제1항 단서중 “열구전색”을 “열구전색 및 불소도포”로, 제3항중 “스켈링과 불소도포수가”를 “스케일링수가”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기타검사수가는 [별표4]와 같이 징수한다.

제14조 본문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노령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본군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인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2 내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보건소법 제2조</u> 및 <u>동법시행령 제4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,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.....지역보건법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,제8조.....</p>
<p>제4조(소장 및 지소장)①(신설)</p> <p>②(신설)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4조(소장 및 지소장) ①보건소장은 군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</p> <p>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을 지도·감독한다.</p> <p>③~④(현행과같음).</p>

[별표2] 제증명발급수수료(수가기준)

구 분	기 준	수수료	비 고
1. 일반진단서	1통당	500원	
2. 특별진단서	"	2,000	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진단용
3.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	"	5,000	
4. 근로자건강진단서	"	500	
5. 출산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	"	500	
6. 성별 및 연령감정서	"	2,000	
7. 사망진단서	"	500	
8. (공무원)채용신체 검사서	"	500	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보건의료원에만 해당 간염검사 포함 (2,000원)
9.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	"	300	
10. 각종증명서 1통 초과발급	"	100	

[별표3] 치과진료 수가기준

종 목	진료내용	수가결정액
스케일링	치석제거	20,000원

[별표4] 기타검사 수가기준

종 목	검진 내용	수가결정액	비 고
골밀도 측 정	골다공증 검 사	10,000	수수료 50% 감액대상자 1.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 2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3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